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7.31 조례 제242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가족"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
 - 2. "가족돌봄 청소년"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 장애·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 청소년 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등을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 - 1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
 - 2.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
 - 3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
 - 4.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,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

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
확보 방안

- 5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 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 - 2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·정서 지원사업
 - 3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 - 4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 - 5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 - 6.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 -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7조(중복지원의 제한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